

# 2026년 대학생 벤처창업 원정대 공고

대학생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하는 도전과제를 통해 창의적 창업 역량과 경험을 쌓고, 지역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

2026년 3월 12일

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

## 1. 모집 개요

- (선발대상) 전남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팀
- (선정규모) 20팀 이내 / 팀당 지역 대학생 5명 이상 구성

※ 대학생 5명 이상 + 멘토 교수 1명(멘토는 팀 자문 참여자로, 팀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)

## 2. 사업 내용

- (활동 주요내용)

구 분	주요내용
주 제	· 지역 핵심산업을 기반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,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실전 중심의 창업 활동을 지원
주요내용	· 창업 사례 벤치마킹, 창업 탐방, 시제품 제작 등 · 아이템 발굴 및 고도화: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 모델 개발 · 시제품 제작 및 개발: 시제품 제작 지원, 시장 가능성 및 사업화 가능성 검증 · 벤치마킹 및 체험 활동: 산업·창업 전문가 사례 벤치마킹, 창업 탐방 등 실전 경험 확대 · 사업 결과공유회 참여 ※ 단, 자격증 취득, 단순 모임 활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## 3. 지원 내용

- (지 원 액) 팀당 최대 1천만원
- (지원내용) 프로젝트 수행비 등 창업활동비, 제작비 등
- (활동기간) 사업비 교부시 ~ 27. 1. 22.까지

※ 선정규모 변경 및 지원금 차등 지원 가능

## 4. 신청 및 접수

- (접수기간) '26. 3. 12.(목) ~ 4. 10.(금) 18시까지
- (신청절차) 대학생팀 서류 제출→소속 대학(산학협력단)수합→진흥원(제출)
  - 대학생 팀: 제출서류를 진흥원 누리집(www.jntle.kr)에 PDF 파일업로드하고, 동일 제출서류를 소속 대학(산학협력단)에 제출
  - 소속 대학(산학협력단): 제출서류를 수합하여 진흥원으로 공문 제출
- ※ 진흥원 누리집(www.jntle.kr) 미가입자는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제출 가능
- ※ 보조금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, 사용 후 반납해야 함

### 《 제출 서류 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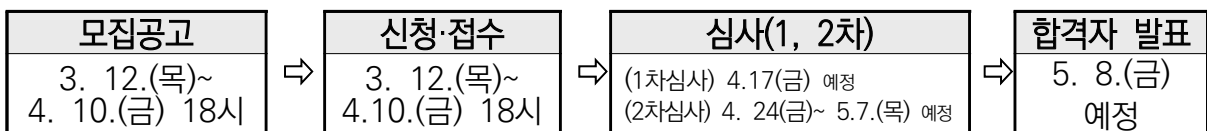
- ◆ <서식 1 ~ 2> 사업신청서
- ◆ <서식 3 ~ 6> 사업계획서
- ◆ <서식 7> 구성원 서명부
- ◆ 기타 증빙: 팀원 재학증명서

- ◆ 지역사회봉사(VMS)에서 발급한 인증서
  - 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봉사 횟수 : 25.1.1.~ 25.12.31.까지
- ※ 최소 봉사 인정시간은 1시간 부터 인정
- ※ 하루를 기준으로 동일한 곳에서 한 봉사는 1회로 인정
- ※ 지역사회 봉사실적은 VMS 발급 봉사활동 실적 중 일자별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한해 인정함

- (서류 작성)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, 정량 지표, 사회적 가치 등을 포함하여 서술
- 문 의 처 : 인재육성팀 사업 담당자(☎ 061-285-9483)

## 5. 선정 및 심사

- (사업일정) 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- (선 정 절 차) 1차 서류심사 → 2차 발표심사
- (1차 서류심사)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평가 실시
  - 심사내용 : 필요성(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부합성) / 25점
  - 결과발표 : '26. 4. 22.(수)예정, 진흥원 누리집 공고

### 《 제 외 대 상 》

- ◆ 동일(유사)사업으로 국가, 타 지자체,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
- ◆ 단순 친목이나 일회성(소모성) 행사, 영리 목적의 모임 또는 활동
- ◆ 경상적 경비(일반운영비, 여비, 식비, 사무실 임차료 등)가 주된 사업
- ◆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- ◆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·개인(관련 법령·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)
- ◆ 진흥원 사업 추진 시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의 사적이해관계자 또는 특수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개인 등
- ◆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
- (2차 발표심사)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 평가 실시/ 20팀 내외 선정
  - 진행방법 : 팀당 PPT 발표시간 3분, 질의응답 3분 이내
  - 심사일정 : '26. 4. 24.(금) ~ 5. 7.(목)(예정) 중 1일
  - 심사내용 : 평가항목 ※ 필요 시 추가 발표심사 가능

연번	평가항목	심사기준	배점	
1	정성	구체성	사업 추진 구체적인 실현방안, 책정 예산의 효율성	25점
2		효과성	사업 수행의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	25점
3		성장성	사업에 대한 지속 확대 가능성	25점
4	정량	가점(+5)	지역사회봉사실적 1점~5점(팀원 합산)	5점

### ☞ 지역사회 봉사실적

구분	인정범위	배점	평가기준
지역 사회 봉사	20~30회	1	- 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봉사 횟수 : 2025. 1. 1.~ 2025. 12. 31.까지 ※ 최소 봉사 인정시간은 1시간 부터 인정 ※ 하루를 기준으로 동일한 곳에서 한 봉사는 1회로 인정 ※ 지역사회 봉사실적은 VMS 발급 봉사활동 실적 중 일자별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한해 인정함 ※ 봉사실적은 팀원별 실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며, 합산 총 횟수에 따라 배점함
	31~60회	2	
	61~90회	3	
	91~120회	4	
	121회 이상	5	

- (선정기준) 서류 + 발표 심사를 합산한 후, 합산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
  - ※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, 대기 합격팀 2팀 선정

## 6. 최종발표 및 향후안내

- (최종발표) '26 5. 8.(금) (예정) / 진흥원 누리집
  - ※ 탈락 팀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음(대기합격팀 순번 개별안내)
- (프로젝트 활동)
  - 운영기간 : 사업비 교부시 ~ '27. 1. 22.까지
  - 중간점검 : '26. 8월 중 예정
- (결과공유) '26. 12월 중 개최 (사업 완료 팀 전원 참석)

## 7. 기타 사항

- 심사 등 상기 일정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심사 시작 전 서면으로 철회 요청, 사업실행계획서 미제출은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응모팀 수가 선정 예정 팀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연장공고 또는 추가공고 실시 가능

- 심사 결과 적합한 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, 공고를 재공고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
-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에 재공고됨
- 서류의 허위 기재, 착오, 누락, 변조,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선정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음
-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사업비를 회수하고 선발을 취소

**사업비 중단 및 회수**

- 주제와 관련 없는 항목이나 집행 불가항목에 사용한 경우
- 운영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
-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-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
- 제출한 사업계획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,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

- 최종 사업선정 후 심사위원회 제안사항에 따라 사업실행계획서를 보완할 수 있으며, 미보완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비 교부 결정 전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,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
- 사업 종료포기 시 보조금 환수 및 정산은 진흥원의 절차에 따라야 함
- 사업 종료포기 등으로 향후 진흥원 사업에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사업 수행 중 제출된 서류와 관련하여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허위 내용이 확인 되면 사업이 취소되고 보조금이 환수됨
- 필요 시 진흥원에서 추가 자료 요청 가능,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프로젝트 활동 시 강사진, 멘토, 멘티 등에게 사진 촬영 및 녹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필수
- 프로젝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·형사상 책임 및 제반비용은 해당 기관에서 부담
- 선정된 팀은 사업 관련 교육에 참석하고, 진흥원이 주관하는 중간보고, 결과공유회,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
- 공고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, 진흥원의 검토 및 해석에 따름